

정 책 과 제 도

2004년에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*

강승복**

본 고에서는 2004년에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소개하고자 함.

I. 근로조건

- 주5일제 근무제 시행
-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개편

II. 고용

-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
-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인상
-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
- 장애인 관련제도 개편
- 전직지원·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기준 변경

III. 사회보장 및 기타

- 고용보험 적용대상 변경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
- 근로소득세 개편

I. 근로조건

◆ 주5일 근무제 시행

- 2004년 7월 1일부터 공기업, 금융·보험업 및 1,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

* 보도자료 노동부, 「200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, 보건복지부, 「2004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」, 재정경제부, 「2004년 1월 1일부터 경제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」, 2003. 12 참조.

**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(kangsb@kli.re.kr).

가 시행

- 개정 근로기준법은 업종·규모별로 단계적(2004년 7월~2011년)으로 적용됨.
-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법정근로시간 단축(1주 44→40시간), 월차휴가 폐지·연차휴가 조정(연·월차휴가 : 1년 만근시 22일~ ,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→연차휴가 : 15일~25일,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)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, 생리휴가 무급화,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(1주 12시간→16시간)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인하(50%→25%),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1월→3월) 등임.
- 이들 사업장 이외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음.

○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

-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인 2004년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(금융·보험업, 공공부문,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)의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임.
- 지원수준은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50만원(단축전 근로자수의 10% 한도)이며,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, 제조업 500인 이하, 건설업 300인 이하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, 기타 산업 100인 이하임.

<표 1>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내용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
○ 법정근로시간 단축	○ 주 44시간	○ 주 40시간
○ 월차휴가 폐지, 연차휴가 조정	○ 월차휴가 : 월 만근시 1일 ○ 연차휴가 1년 만근 10일,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	○ 월차휴가 폐지 ○ 연차휴가 15~25일(2년당 1일 가산)로 조정, 1년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 부여
○ 휴가사용촉진 방안 신설	<신 설>	○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 면제
○ 생리휴가 무급화	○ 유급생리휴가 : 월 1일	○ 생리휴가의 무급화
○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(3년간 한시적)	○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○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0%	○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6시간으로 확대 ○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%로 인하
○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	○ 1월	○ 3월

◆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개편

- 2004년 1월 1일부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 및 유해인자 변경
 - 측정대상이 기존의 옥내에서 옥내 및 옥외 작업장으로, 측정대상 유해인자는 기존의 116종에서 191종으로 변경됨.
-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측정 결과치에 따라 달라짐.
 - 기존 측정횟수는 6개월 당 1회 이상이었으나, 측정대상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측정하고 그 후 6개월 당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
 -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당 1회로 강화됨.
 - 반면, 최근 1년간 작업공정설비의 변경, 작업방법변경, 설비이전, 사용화학물질 등의 변경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거나, 작업환경 측정 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 연 1회로 완화
- 건설업체의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
 - 유해·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에 위험요소가 많은 연면적이 큰 건축물,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건설·개조 또는 해체 및 다목적댐건설 등의 공사를 추가 하여 동 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
-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의무화
 - 직업성질환 이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기관은 공정한 평가 및 근로자보호방안 개발을 위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함.

II. 고용

◆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

-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인력을 근로자신분으로 도입하는 고용허가제 시행
 -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,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는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가 병행 실시됨.

-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(1개월)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,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받은 후 적격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음.
-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(단, 근로계약은 1년마다 갱신)
- 근로계약 체결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,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,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을 하여야 함.
- 사업장의 휴·폐업,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,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금지됨.

◆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인상

- 200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변경
 -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은 기존의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됨.
- 육아휴직 장려금 변경
 -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기존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던 것과 더불어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후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~15만원이 추가로 지원
- 직장보육교사 1인당 임금지원액은 기존의 월 65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변경

◆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

- 2004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 기준 변경
 - 지원대상은 기존의 55세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로 변경
 - 지원기준율은 기존의 전업종 6%에서 제조업 4%, 부동산업 42%, 사업지원서비스업 17%, 기타업종 7%로 변경
 - 지원기간은 기존의 무한정에서 5년으로 변경
-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기준 변경
 - 지원대상은 기존의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5세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업주

- 에서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0세이상인 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변경
- 지원수준은 기존의 1인당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에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(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)하는 것으로 변경

○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폐지 및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 장려금 신설

- 기존의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은 폐지됨.
- 대신,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(다만, 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12개월 지원)하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신설

◆ 장애인 관련 제도 개편

○ 2004년 1월 29일부터 의무고용사업체 범위 변경

- 기존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왔던 의무고용사업체 범위가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- 2% 장애인고용의무 미달업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,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00인미만 사업체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, 100인이상 300인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~3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, 부과후에도 부과시점부터 5년간은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50%만 납부
 - ※ 200인~299인 : 2006년부터 부담금 부과, 2006~2010년까지는 부담금의 50%만 부과, 2011년부터 부담금 전액 부과
 - ※ 100인~199인 : 2007년부터 부담금 부과, 2007~2011년까지는 부담금의 50%만 부과, 2012년부터 부담금 전액 부과
- 300인미만의 적용확대 사업체는 당분간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지만,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.

○ 고용부담금 및 장려금제도 변경

- 고용의무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1/2 범위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
- 2% 의무고용률 초과사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기준단가가 기존의 월 474천원에서 월 300천원으로 인하되며, 장애정도에 따라 기준단가의 100~175%로 차등지원하던 것을 125~150%로 변경

- 직업재활사업 강화
 -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기존의 19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확대되며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기존의 222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

◆ 전직지원·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기준 변경

- 2004년 1월 1일부터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대상 변경
 -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기존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예정자에서 고용조정·정년·근로계약 만료로 이직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로 변경
 - 1인당 전직지원 소요비용은 기존의 1/2(대규모기업 1/3)에서 2/3(대규모기업 1/2)로 변경
-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변경
 -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액이 기존의 1인당 채용 후 첫 6개월만 60만원에서 첫 6개월은 60만원, 나머지 6개월을 30만원 씩 총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

Ⅲ.사회보장 및 기타

◆ 고용보험 적용대상 변경

-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변경
 - 기존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일용근로자,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, 국내 파견 외국인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 변경
 -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근로자 범위가 기존의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변경
-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
 -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~30만원을 분기별

로 지급

- 지원요건은 건설업 면허·허가·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·신고하고,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

◆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

○ 2004년 1월 1일부터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

-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4인가구 기준 최고재산 소유한도가 대도시는 2003년 5,745만원에서 6,330만원으로, 중소도시는 2003년 5,445만원에서 5,630만원으로 변경
- 부양의무자 기준 중 친정부모 등은 기준에 소득·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하였으나,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
- 자동차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례를 통하여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.

○ 현금급여액, 각종 지원비 등 인상

-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.5% 인상되는데,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기존 월 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인상됨.
-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최대 89만 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, 최대 92만 9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.
-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50% 인상되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, 고등학생 교과서대 지원비는 100% 인상되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.

○ 자활사업 대상 확대

-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
-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후견기관이 신설(37개소)
- 광역단위에 자활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창업지원
-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기존의 학생,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가자에서 자활사업 참가자 전체로 확대

◆ 근로소득세 개편

- 2004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범위 변경
 - 연간 총 과세대상급여가 500~1,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7.5%에서 50.0%로 변경
 -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, 근로자가 받는 영·유아 보육비 및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 신설
 -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며,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(기존 500만원)는 폐지되고, 연간 총급여 2,5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예식비·장례비·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
 -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
 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0.0%에서 55%로, 공제한도는 기존의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
-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단순화
 - 외국인 임직원의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%를 적용하는 방법과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(9~36%)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